

● 제308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
민간위탁 동의안(3225)
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
민간위탁 동의안(3226)

검 토 보 고 서

2022. 6. 1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3225, 322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3225)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22. 5. 25.
- (3) 회 부 일 : 2022. 5. 27.

나.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3226)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22. 5. 25.
- (3) 회 부 일 : 2022. 5. 27.

2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3225)

-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문

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
-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3226)

-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·교육·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-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3225)

(1) 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47-1
- 시설규모 : 연면적 453.7 m^2 , 총 5층
(지하 1층, 지상 4층)

- 주요시설 : 사무실, 상담실, 강의실, 진료실, 아동돌봄실
- 인력운영 : 5명 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
사회복지사 3명)

(2)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3. 1. 1.~ 2025.12.31.)
 - 위탁업무
 -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 일체
 - 일반 상담 및 법률,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
 - 한국어교육, 컴퓨터교실, 한국어자격증반 등 교육사업 운영
 - 문화체험 행사, 의료지원, 커뮤니티사업 등 운영
 - 소요예산 : 338,000천원(2022년)
 - 산출근거 : 인건비 257,220천원, 운영비 41,000천원,
사업비 39,790천원
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2.05.12)

(3)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,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
- 다양한 기관(병원, 경찰서, 법률사무소, 노무사, 봉사자, 종교단체 등)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

나.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3226)

(1) 시설 개요
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9
- 시설규모: 66.66㎡ (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3층, 사무실)
 - ※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
- 주요시설: 사무실, 상담실, 강의실, 강당 등
- 인력운용: 5명 (센터장 1명, 과장 1명, 사회복지사 3명)

(2)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3. 1. 1.~ 2025.12.31.)
- 위탁업무
 -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 일체
 - 일반 상담 및 법률,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
 - 한국어교육,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
 - 문화체험 행사, 의료지원,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

- 소요예산 : 243,000천원(2022년)
 - 산출근거 : 인건비 178,000천원, 운영비 14,000천원,
사업비 51,000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(사회복지법인
티뷰크사회복지재단)
 - 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2.05.12)
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2.05.16)

(3)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,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-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은 체계화된 한국어교육 제공 및 다양한 외부자원 연계(법률홈닥터, 고려대학교 병원, 사회복지협의회 등)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에게 법률 상담 및 의료, 물품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.
-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의 적응력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재계약 추진

4. 참고사항

가.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 번호 3225)

(1)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

제7조(지원의 범위)

-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9. 26., 2021.7.20.>
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
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 <개정 2021.7.20.>
-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7.20.>

제20조(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)

-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4, 2017.1.5, 2021.7.20>

(2)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편성 요구

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(4) 기 타 :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·재위탁 추진계획
(외국인다문화담당관-20922, 2022.4.13.)

나.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 3226)

(1)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

제7조(지원의 범위)

-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9. 26., 2021.7.20.>
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
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 <개정 2021.7.20.>
-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

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7.20.>

제20조(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)

-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<개정 2015.5.14, 2017.1.5, 2021.7.20>

(2)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편성 요구

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(4) 기 타 : 외국인노동자센터운영 재계약·재위탁 추진계획

(외국인다문화담당관-20922, 2022.4.13.)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한광모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- 동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동의안 2건 중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¹⁾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,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는 운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 제2항²⁾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³⁾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노무, 법률, 생활 등 상담지원, 한글·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, 문화체험 행사 등임.
- 외국인노동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8조⁴⁾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외국인
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- 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, 2021.12.30>
- 3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 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지원시설의 하나로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⁵⁾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⁶⁾에 따라 서울시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.

- 동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○ 서울시외국인지원시설 가운데 ‘외국인노동자센터’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불편·부당사항 해소를 권익보호 및 각종 프

-
- 4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0>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7.20>
- 5)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6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3.28, 2019.9.26, 2021.7.20>
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
 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
 3.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
 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 5.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
 6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·교육사업
 7.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 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·지원
 9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
 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 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로그래밍 지원하기 위한 특화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, 현재 서울시에
 는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성동, 금천 2개 센터를 포함하여
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.

<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현황>

연번	시설명	운영기관	소재지	규모	인력	개설일	'22년 예산 (백만원)	비고 (위탁기간)
1	성동	(사)노동인권회관	성동구 무학로	453㎡	5명	'01.12.14	338	서울시소유단독시설 (2020.1.1.~2022.12.31)
2	성북	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	성북구 오패산로	23㎡	5명	'09.04.30	256	복지관 활용 임차 (2020.1.1.~2022.12.31)
3	금천	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	금천구 가산로	66㎡	5명	'07.05.01	243	복지관 활용 임차 (2020.1.1.~2022.12.31)
4	양천	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	양천구 목동동로	70㎡	5명	'09.04.28	258	복지관 활용 임차 (2020.1.1.~2022.12.31)
5	은평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은평구 은평로	37㎡	5명	'08.03.13	243	복지관 활용 임차 (2020.1.1.~2022.12.31)
6	강동	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	강동구 성안로	46㎡	5명	'08.03.15	263	복지관 활용 임차 (2020.1.1.~2022.12.31)

○ 6개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.

<민간위탁 추진 현황>

- 성동 : 성동구 소관 위탁 또는 직영 후('01.~'15.), 1차 공모('15.~'16.), 2차 재계약('17.~'19.), 3차 공모('20.~'22.)
- 성북 : 1차 ~ 4차 연단위 위탁('09.~'13.), 5차 공모('14.~'16.), 6차 재계약('17.~'19.), 7차 공모('20.~'22.)
- 금천 : 1차 ~ 6차 연단위 위탁('07.~'14.), 7차 공모('14.~'16.), 8차 공모('17.~'19.), 9차 재계약('20.~'22.)
- 양천 : 1차 ~ 4차 연단위 위탁('09.~'13.), 5차 재계약('14.~'16.), 6차 공모('17.~'19.), 7차 재계약('20.~'22.)
- 은평 : 1차 ~ 5차 연단위 위탁('07.~'13.), 6차 재계약('14.~'16.), 7차 재계약('17.~'19.), 8차 공모('20.~'22.)
- 강동 : 1차 ~ 5차 연단위 위탁('08.~'13.), 6차 재계약('14.~'16.), 7차 재계약('17.~'19.), 8차 공모('20.~'22.)

-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금번 동의 대상이 되는 성동센터 또한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, 現수탁기관인 ‘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’이 재계약을 포기하여 재위탁(공모)을 추진하게 되었음.

<동의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>

구분	수탁법인	위탁기간	위탁방법
성동	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	‘15.3.1~’22.12.31.(7년10개월)	재위탁(공모)
금천	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	‘17.1.1.~’22.12.31.(6년)	재계약

- 또한 성동센터의 경우 타 센터(사무형 위탁)와 달리 시설형 위탁으로 서울시 소유 단독시설을 사용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‘21.3.30. 성동구에서 서울시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통보로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음.

※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계용역 추진(‘21.6.24.~’21.9.17.), 공사시행(‘22.7.~’22.10. 예정) 후, 실시결과를 ‘22.12.31.일자까지 관할 구청에 보고해야 함.

- 시행될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어 위탁사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, 장기간 센터 사무를 수행한 현재 수탁기관의 재위탁 포기로 수탁기관의 변경이 예상되는 바, 민간

위탁 시설운영 및 사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는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할 것임.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⁷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⁸⁾와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⁹⁾에 재한외국인의 생

7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8) 「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」 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

9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3.28, 2019.9.26, 2021.7.20>

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
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
3.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
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5.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
6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·교육사업
7.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·지원

활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,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교육 등 각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○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10)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 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-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무, 법률, 출입국, 산재, 의료, 생활 관련 상담, 한국어 교육,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또한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18조11)에

9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

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
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10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11)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0>

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

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3 종합 검토 의견

-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재한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, 노무·법률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성동센터의 경우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포기로 새로운 수탁기관의 변경이 예상되는 바,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시설운영 및 사무를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집행부는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할 것임.

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7.20.>

[제목개정 2021.7.20]